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0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보공단의 의료시설 운영 관련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3

I. 개요

1.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1.
- (3) 회 부 일 : 2025. 5.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보공단의 의료시설 운영 관련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u> <u>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4조제1항제7호¹⁾에서는 공단의 업무로 의료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 정관」(이하 “정관”)²⁾에서는 공단소속의 보험자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³⁾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관에서는 일산병원의 사업으로 ① 진료사업,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④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⑤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음식점 등 편의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의료시설의 운영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2조(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63조(의료시설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사업) ① 공단은 병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료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5.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타인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병원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참고자료] 일산병원 개요 및 현황 참조

시설) 및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⑥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일산병원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의 경우 흑자로 나타났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 및 의정갈등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2021년을 제
외하고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일산병원 재정수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비 용	손 익
2015년	204,826	202,266	2,560
2016년	234,950	224,277	10,673
2017년	252,841	247,370	5,471
2018년	269,802	267,811	1,991
2019년	294,030	291,308	2,722
2020년	285,710	309,939	△24,229
2021년	344,617	329,823	14,794
2022년	336,291	346,750	△10,459
2023년	327,443	363,813	△36,370
2024년	358,069	359,113	△1,0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공단이 일산병원 등 의료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⁴⁾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마련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인 “모집”⁵⁾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행위인 “접수”⁶⁾에 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⁷⁾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 제외)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기부금품법 제3조⁸⁾에서는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등 11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¹⁰⁾의 심의를

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부심사위원회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연간 2~4회 개최되고 있으며, 기부금품 접수 관련 심사시 기부금품 기탁의 자발성 여부, 기탁자와 수탁자간 이해관계 여부, 수탁기관의 사업목적 수행 관련 직접적인 필요 여부, 접수시 사회적 물의 발생 여부, 접수받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대한 지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부금품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와 직무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제한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음.¹¹⁾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또한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문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

□ 참고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개별 법률 중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²⁾,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³⁾, 「국립대학병원 설치법」¹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⁵⁾ 등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병원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소방병원 등의 경우 자체적인 절차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가 가능한 상황임.¹⁶⁾

□ 공단의 경우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¹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¹⁸⁾,

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1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1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1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16) 참고로, 현행법상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가 아닌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373호)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17)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40년사, 2017

18)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1978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자가 513개에 이르렀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혁에 따라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되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공단 및 일산병원이 기부금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금지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공단 및 직영병원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질의에 대하여, 공단의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¹⁹⁾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른 경우, 공단이나 일산병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²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3~6개월의 가량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²¹⁾

19) 행정안전부는 2022년 3월 해당 유권해석에서 “공단 및 직영병원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반대해석하여 공단의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금지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2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1) 다만, 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자발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공단이 접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개정안은 공단의 의료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39조의3제1항에서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의료시설의 운영)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단이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²²⁾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2) 참고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손금불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대상인 특례기부금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 둘째, 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9조의3제2항에서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변경(예시: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이용자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재원으로 자발적 기부금품을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기관을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병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 입법의도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법에서 국가나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 따라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공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목적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개별법에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7조 및 제62조

-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서 ①건강보험 모델병원 ②공공병원 ③일반병원 역할 수행

□ 주요 연혁

- ('92. 8월) 병원 건립 승인 ... 보건복지부
- ('00.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개원 ... 774병상 규모
- ('06. 7월) 의학연구소 개소
- ('17. 3월) 동관 증축 ... 830병상 규모(+56병상), 암센터 등
- ('20. 9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선정
- ('20.12월~'22.6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및 운영
- ('21. 7월) 경기도 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
- ('22. 6월)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 ('23. 4월)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 ('23. 5월) 경기도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23. 7월)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지원기관 선정
- ('23.12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
- ('24. 4월) '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사업 수행기관 선정

2

일산병원 개요

□ 중별 및 병상

○ (의료기관 중별) 종합병원

○ (규모) 지상 13층, 지하 5층 ... 대지 7,877평*, 건물 34,123평

* '건강통합관리센터' 부지 1,000평 포함

■ 인근 직장 어린이집(대지 145평, 건물 526평 /지상 5층, 지하 1층) 별도 운영

■ 인근 카프병원 일부를 임차하여 국가검진센터 및 병원연구소, 사무공간 등 활용

○ (병상) 총 794개, 개원 시부터 4인 병실을 기준으로 운영

- 공익적 병상 101개 운영 ... 재활병상(53), 완화의료(20), 정신과(28)

(단위: 개, %)

계	4인실 (기준병상)	1인실	2인실	3인실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Stroke unit	집중 치료실
794 (100%)	612 (77.1)	47 (5.9)	24 (3.0)	27 (3.4)	5 (0.6)	6 (0.8)	73 (9.2)

□ 진료과목

○ 총 24개 진료과 운영

내과	신경과	정신 건강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성형 외과	마취 통증	산부인 과	소아청소년 과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의 학과	영상 의학	방사선 종양	병리과	진단검사 의학	재활 의학	가정 의학	핵의학	치과	응급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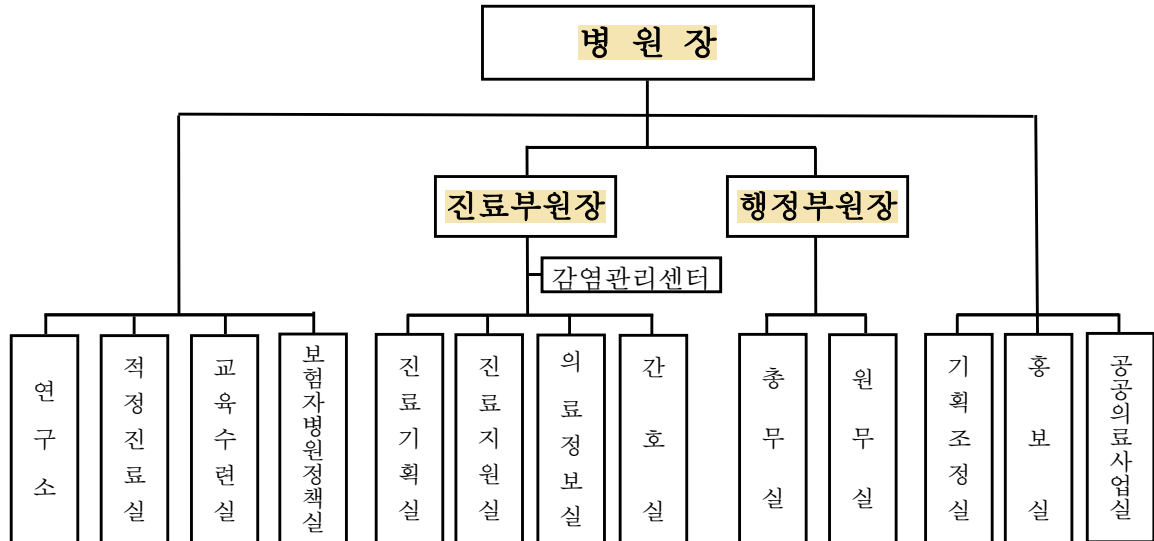
○ (중증·고위험질환 전문진료센터) 암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 (사회적 관심질환 진료센터 등) 치매예방센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소아 발달지연클리닉 등

3

조직 및 인력

□ (조직) 12실, 1 연구소, 1 사업단, 49부 구성



□ (인력) 정원 2,587명

(단위: 명)

계	병원장	의사직	관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의학 물리·화·지	업무 지원직
2,587	1	208	1	1,106	29	240	151	11	1	1	838

□ (예산) 2025년은 전년 대비 5.54%(237억 원) 증가한 4,517억 원

(단위: 억 원)

수입		
계	자체수입	공단지원금
4,517 (100.0%)	4,039 (89.4%)	478 (10.6%)

□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익	2,350	2,528	2,690	2,940	2,857	3,466	3,363	3,274	3,581
비용	2,243	2,474	2,678	2,913	3,099	3,298	3,468	3,638	3,591
손익	107	54	20	27	△242	148	△105	△364	△10